

샤갈의 마을-씨엘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1.1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1.11.)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혹은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본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산시는 전입제한일이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정제 제한사항 : 가정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정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2년 이내 가정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의 선정방법이 변경되었으나, 당 사업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존과 같이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chagallvillag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정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제한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19년 1월 16일(수)	2019년 1월 17일(목)	2019년 1월 18일(금)	2019년 1월 24일(목)	2019년 2월 7일(목) ~ 2월 9일(토)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건본주택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경산시 건축과-1237호(2019.01.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산4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4층 1개동 총 32세대 중 일반공급 28세대
 [특별공급 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0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19000020-01	84.6552A	84A	84.6552	22.2289	106.8841	79.3261	186.2102	224.5587	12	1	1	2	-	4	8	0
	2019000020-02	84.9623B	84B	84.9623	20.6418	105.6041	79.6138	185.2179	225.3733	4	-	-	-	-	0	4	0
	2019000020-03	124.2529	124	124.2529	29.0876	153.3405	116.4311	269.7716	329.5967	4	-	-	-	-	0	4	0
	2019000020-04	146.9255	146	146.9255	36.0764	183.0019	137.6764	320.6783	389.7387	8	-	-	-	-	0	8	0
	2019000020-05	173.3662	173	173.3662	42.9960	216.3622	162.4527	378.8149	459.8760	4	-	-	-	-	0	4	0
합 계										32	1	1	2	-	4	28	0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복체등 공동주택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주택형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계약시	2019.02.25	2019.04.25	2019.07.25	2019.11.25	2020.01.25	2020.03.25		입주지정일
84A	12	192,406,000	352,594,000	-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84B	4	230,958,000	423,242,000	-	654,20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196,260,000
124	4	297,102,000	544,453,000	54,445,000	896,0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268,800,000
146	8	359,739,000	659,238,000	65,923,000	1,084,900,000	108,490,000	108,490,000	108,490,000	108,490,000	108,490,000	108,490,000	108,490,000	108,490,000	325,470,000
173	4	417,136,000	764,422,000	76,442,000	1,258,000,000	125,800,000	125,800,000	125,800,000	125,800,000	125,800,000	125,800,000	125,800,000	125,800,000	377,40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6552A	84.9623B	124.2529	146.9255	173.3662
약식표기	84A	84B	124	146	173
홍보물 및 견본주택, 안내자료 표기	D10A	F5A	F5B	D23	D23C

※ 위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설계도서상 표현 및 주택 설계상 이해를 돕기위한 명칭으로 표현되었사오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기 바랍니다.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면적 확장공사는 무상시공 예정이며 확장되는 부분 및 면적은 주택형 별로 상이합니다. 미시공 선택시 별도의 공급금액 인하는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공동주택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가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상층 다락은 공용공간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상층세대가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게 됨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상층 다락 외부 공간 포함).
- 다락이 시공되는 최상층 세대는 해당 입주자가 다락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며, 이에 대해 청약 및 계약전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므로 여타세대는 해당 세대가 다락을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사용중지의 요구·공동사용 불가 및 철거 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124	146	173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	-	-	-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	-	-	-	2
		일반공급(25%)	-	-	-	-	0
합 계		4	0	0	0	0	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주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분양권 등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③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① 또는 ② 의 지위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과 ②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②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②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②의3.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②의3.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경산시)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원	7,016,284원	7,464,006원	7,950,972원	8,437,938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002,591원 ~ 6,003,108원	5,846,904원 ~ 7,016,284원	6,220,006원 ~ 7,464,006원	6,625,811원 ~ 7,950,972원	7,031,616원 ~ 8,437,93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003,109원 ~ 6,503,367원	7,016,285원 ~ 7,600,974원	7,464,007원 ~ 8,086,007원	7,950,973원 ~ 8,613,553원	8,437,939원 ~ 9,141,100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1.11.)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1.11.)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야만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일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은 경산시에서 3개월 미만 거주자의 경우 기타지역의 자격으로 청약됨

2.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9.01.11.)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경산시 /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9.01.11.)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9.01.11.)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분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경산시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40%	60%
전용면적 85㎡초과	0%	100%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미만	0	8년 이상~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구분	신청자격
<p>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p>
<p>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p>	<p>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p> <p>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p> <p>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임</p> <p>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p> <p>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분양권 등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③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① 또는 ② 의 지위 •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과 ②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②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②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의3.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②의3.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p>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p> <p>10.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p> <p>6.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제4절 특별공급제 외)시 적용함</p>
부양가족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p>
비고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p>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01.16.(수) (APT2you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9.01.17(목)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2순위	2019.01.18(금)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청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청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우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우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1.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p>[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별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청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p>본인 신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지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3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9. 1. 24.(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9. 2. 7.(목)~2019. 2. 9.(토)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 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주소)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 1. 24 (목) ~ 2019. 2.2 (토)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p>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p> <p>제공일시 2019. 1. 24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p>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2019.02.07.(목) ~ 2019.02.09.(토) (3일간) 10:00 ~ 16:00	사갈의마을 갤러리하우스 견본주택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674)
일반공급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계약 체결 합니다.

2.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서류	구 비 서 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계약금	• 계약금 지정계좌에 입금한 입금증 (건본주택 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서	•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 계약용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 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거주기간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및 만18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당첨통보자	○		무주택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용도 : 주택 계약 위임용
	○		인감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체결 장소 비치)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대리인)	• 본인(계약자)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포함)으로 간주함
	○		인장(대리인)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조)

-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공동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공동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0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시행사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4.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분양대금 관리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대구은행	504-10-337522-2	(주)하나자산신탁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에는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301호 - '301홍길동' / 102호 - '102홍길순')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중도금대출건에 대한 이차(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사업주체의 이차 부담은 '계약자가 계약금2차를 정상일정에 납부할 경우'의 조건부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1차) 완납 시 중도금 대출 요건 중 납부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납부기일이 경과한 분양대금을 미납하였거나 관련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의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 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LTV,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용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등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사업비대출보증,조합주택시공보증,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공동주택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시공

■ 본 공동주택 전 주택형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무상 (서비스) 시공 됩니다. 면적 및 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제공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84A	84B	124	146	173
공급액	11,600,000	13,800,000	12,000,000	4,100,000	3,600,000

■ 기본형 주택과 확장형 주택은 구조가 상이하여 기본형 주택의 경우 확장형 기준으로 제공예정인 기본 서비스품목 (시스템에어컨2실, 흉바, 수납장 가구, 일부 주방가구 등 건본주택, 홍보물상 '분양가포함'으로 표기된 항목 다수)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확장 부위에 층별 외벽면적 증가 및 단열구조가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층간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는 무상제공이므로 별도의 계약 체결은 불필요 하며, 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도 별도의 차액 환불 또는 분양가 조정 등은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면적 및 확장위치는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장 위치에 따라 테라스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와 테라스 사이 난간이 설치되며, 이는 준공시 까지 시공되어야 하는 사항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시기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유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일 : 2020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으로 인한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주민운동시설(실내 탁구대 2세트), 주차장 등

■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옵션

□ 추가선택품목계약

(단위: 원, VAT 포함)

명칭	적용 주택형	시공품목	공급가
시스템에어컨 추가	전 주택형	시스템에어컨 2실 추가 설치 (기본형 대비 에어컨 사양 변경)	2,900,000

(VAT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계약시	계약서상 지정일	입주지정일	
납부액	20%	30%	50%	100%
	580,000	870,000	1,450,000	2,900,000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옵션품목금액	대우은행	166-10-002857	대영에코건설(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옵션품목 공사비는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일정은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옵션품목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옵션품목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옵션품목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 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옵션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추가옵션품목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추가옵션품목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옵션품목 시공 세대는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등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마감재(현관, 천장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옵션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추가 옵션 미 계약시 기본 제공되는 에어컨 및 냉매배관, 전기설비 등은 거실, 안방에만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타일·창호·가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갈레반이 포함)거실, 주방 및 식당, 현관(타일, 강화대리석), 침실(강마루), 발코니(타일)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벽,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타일, 물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스위치	배관, 배선
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판, 욕조, 양변기(공용/부부욕실),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쿡탑, 후드등의 주방 빌트인 가전제품류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 전기.통신 배관 /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가구류 및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신발장, 불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일체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내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원)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6552	84.9623	124.2529	146.9255	173.3662
마이너스옵션 금액	29,010,000	29,090,000	42,540,000	51,140,000	60,440,000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금액 총액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산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옵션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부분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입주자의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정한 최초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품목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청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시공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날(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약속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시공상의 문제로 설치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므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시 주택형 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무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 사업지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용적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합니다.
- 설계도서상 주택형 명칭은 면적표시와는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조)

면적구분	84.6552	84.9623	124.2529	146.9255	173.3662
약식표기	84A	84B	124	146	173
설계도서	D10A	F84	F124	D23	D23C

- **참고: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청약시 표기는 약식표기를 따릅니다.**
-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설계도서 명칭으로 표기하되, 일부 주택형의 명칭은 이해를 돕기위해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F84를 F5A로 표기하고, F124는 F5B로 표기함)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해 오해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산시,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공급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경산시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당사의 다른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태, 전용률, 층, 향, 소음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탐승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시 모형 및 분양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경산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구조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 후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외관, 택지개발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미분양 세대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 임대 또는 기관 등에 매각 처리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혹은 관련기관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 영리목적 범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계약자 단독 자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건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형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남측 민간유료체육시설(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야간 조명 및 이용객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식재(잔디 등) 관리활동으로 인해 해당 토양에 농약 등의 잔류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남측 민간유료체육시설(골프장)은 당 사업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사업부지 북측 상성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동북측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재배 활동에 따라 농약, 비료등이 사용되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서측 약 500m 지점(평산동 산37-3)에 송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시설 동측 약 100m지점 (평산동 649-4)에 한국전력공사 변전시설 및 송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해 조망 및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다양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혹은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시행자가 설치 및 개발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해당 단지 및 인근 타 주택 및 시설물 명칭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 등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수질오염총량제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부지 개발행위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된 관련 자료, 사갈의 마을 부지 홈페이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동측에 산업생산시설이 위치하여 있으며, 그 시설로 인한 경관/악취/소음의 영향에 대하여 계약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부지인근에는 화장품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게 될 예정이며,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는 평산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되며, 중학교는 사동 중학군에 해당되며, 고등학교는 경산시내 학교에 배치됩니다. 입주시점
- 본 사업부지 인근 근린공원 1호, 경관녹지3, 4, 5호 주변으로 분묘가 존치함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동편 전면에는 기존 경작지가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경작지가 조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서편 측면에는 기존 묘지가 있으며, 서측 세대는 묘지가 조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시설물 뿐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의 종류와 개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지 외부 시설물의 존치와 운영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전 공인기관 의뢰를 통하여 소음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단지 도로변측으로 방음시설(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접한 저층 세대는 일조, 채광, 조망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및 설계

- 카달로그의 각종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CG와 참고용 이미지 컷으로 구성되어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는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개발계획 및 각종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변경되는 부분은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오니 청약 및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동주택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을 포함한 각종 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학교용지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닙니다.
- 본 단지는 입주 시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 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사용감사일 및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은 정산이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일부세대의 외장부 벽에 임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커뮤니티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한 세대 및 주민공동시설 인접 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쓰레기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과 냄새유입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에 인접한 세대와 데크 하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차량 불빛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수직동선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철통 등)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테라스 장식을 부착 및 내용양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되는 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외부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형태 및 높이 등이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내 통로의 유효 높이 및 진입 제한 높이는 약 2.4m로 높이가 초과하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 주차장과 공동주택 지하층 엘리베이터출구와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남쪽과 서쪽의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된 인도와 단지내의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인원의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공경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경관조명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측면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서 인접 세대는 보행자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상부의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일부 설치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므로 입주민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하부 P i t 높이, 비내력벽의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배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각종 식재 및 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 조형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공장생산 자재 (예: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속동의 공용부는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영시설, 포장,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각종 시 설물(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강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 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변경 또는 설계 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관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내부평면계획,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이 상이할 경우, 정산처리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는 146㎡형 주택건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보행도로 및 휴게공간으로 인해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동배치상 생활폐기물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출구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저층과 방향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배치로 인한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테라스 격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 구조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문주의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공동주택)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기타 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은 주동 서측면에 12m가량 이격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후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 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하부에는 제연휨통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출입구, 지상주차장 등의 설치로 인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및 차량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및 발전기실, 급배기구(연도포함) 등으로 인해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운행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공사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지 서측편 사면(평산동 586-9번지)에 상수도가압 시설은 본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급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되어 관리됩니다. 설치 일정 및 세부사항은 관계규정 및 담당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지 남서측 진입로 회전교차로는 단지 외부시설이며 당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간별 사업부지 단지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울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조건 등에 의거하여 단지 경계에는 담장이 미시공되나 부득이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주변도로 및 경관을 고려하여 1.2m 이하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벽 마감은 외단열통합시스템으로 설계 되었으며, 마감재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등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출입은 각 동별로 위치 및 세대별 출입 여건이 상이 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으로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단지 신축으로 건축사향 및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층·동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 소음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팬룸, DA)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입면, 벽체 마감, 외부 색채, 간판 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지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사항은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2.4m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과 공동주택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주택 지하 64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45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와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당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엘리베이터는 15인승으로 이삿짐 운반시 일부 대형 시설물은 운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별도계약 품목)포함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동별 출입구 및 관리사무소 측 계시판 등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 동·호수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임.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관리사무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 사시가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운행이 불필요하거나 여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운행 층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은 L(로비)층으로 표기하며, 다락이 있는 층은 P층으로 표기함
- 1층은 엘리베이터 운행이 불가 합니다.
- 지하1층은 L(로비)층으로 표기하며, 4층은 해당세대 호수에 따라 편이상 5층으로 표기하며, 다락이 있는 층은 P층으로 명명함
- 지하1층은 배수시설의 규정된 배수용량을 넘는 물이 유입될 경우 물고임 또는 물넘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은 공용공간인 주차시설과 인접하여 있으며, 차량이동, 입주인/방문객 통행, 가재도구적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입주인의 필요에 의한 시설변경, 용도변경, 관리주체변경, 관리범위변경 등 모든 공용부 변경사항은 공동 입주인 동의하에 타당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시고, 준공 후 다수 입주인의 동의에 의한 적법한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서북측 사면에 계단 시설물은 공공도로와의 통행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아니며, 준공 전 하단부에 난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부지 북동측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이 위치하며, 지하주차장 출입구 서측에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가 배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부분

- 본 홍보물 상의 각종 평면도, 조감도, 투시도 아이소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 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광 후,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과 전시품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창문은 분공사시 업체 선정에 따라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분공사시 색상과 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물딩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분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내부의 크기, 재질,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 가전 이외의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가능한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기본 실외기 설치 공간에 부적합 할 수 있으니, 에어컨 구매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위치에 따라 일부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는 실에는 환기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팬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바닥 구배로 인하여, 욕실 신발의 높이가 구배보다 높은 경우 문턱에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층 욕실 및 주방 위치에 따라 상하수도 배관이 바닥면 아래를 수평으로 통과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배수시 아래/위 세대간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외부로 조망할 수 있는 창호가 설치된 세대(124㎡, 146㎡, 173㎡)는 내·외부간 밝기 차이에 따라(야간 또는 일광이 적은 기후상황 등) 외부에서 욕실 내부가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커튼 등 입주자의 시야 차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 통신 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내측에 설치되며, 세대 분전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10A:현관 / D23:아래층 욕실 앞 복도벽면 / D23A :아래층 욕실3 앞 복도벽면 / F5A 및 F5B : 현관 측 벽면
- 스마트폰 및 PC로 홈네트워크 원격제어를 사용할 경우 홈네트워크용 전용인터넷을 설치해야하며 인터넷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 스마트 도어락은 사용자 핸드폰 지문인증으로 블루투스 연동 디지털 도어락 제품이며, 일부 스마트 폰과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스위치는 조명, 난방 및 대기전력자동차단 기능이 통합되어있는 제품으로 조명, 난방 및 대기전력자동차단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은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됩니다.
- 마이너스오피션 선택 시 기본제공 가전 및 발코니확장공사가 무상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비확장형 선택으로 인하여 난방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마이너스오피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공사가 무상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비확장형 선택으로 가변형 벽체 등 모든 선택사항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확장 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 테라스에 설치되는 난간과 테라스 세시의 형태 및 사양,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앞 테라스에 해당하는 외부공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채광 및 환기가 불가한 층으로, 설계상 상부 개방형으로 설계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기준층에 비해 채광과 환기가 심히 불량할 수 있으며 각 입주자 특성에 따라 심각한 생활환경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건축도면 및 견본주택의 모형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단위세대 CG 및 각종 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상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및 '오피션 적용'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오피션' 선택 유형에 따라 실 시공 현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성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테라스 하우스 세대의 천장높이는 2,400mm, 일부 천장높이는 2,500mm로, 욕실 등은 2,300m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부창, 자동 제어 시스템, 전열 교환기,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 공동주택에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소방법규 기준에 의해 스프링클러는 미시공 됨.(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자사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은 확장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비확장 시 생활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윌패드, 주방TV 등 홈네트웍 관련 제품 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84.9623㎡ 주택 및 124.2529㎡ 주택의 보일러 배기구는 주동 배면부 방향에 위치하여 설계상 화단 위쪽에 설치 예정이며, 타 주택형 보일러 배기구는 보일러실에 인접한 주동 전면부 벽면에 설치됩니다.
- 보일러 배기구에는 기온차에 따라 성애 또는 고드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일러 배기구 하단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보행 또는 인력 작업을 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이삿짐 운반은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다리차 이용시 외벽 또는 난간, 창문턱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저층 등)는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다락을 사용하는 세대는 에어컨 실외기가 다락층 외부에 설치됩니다.
- 다락을 사용하는 각 세대의 다락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서, 격벽은 규정에 맞게 시공되나, 이웃세대 간 통행을 막는 용도가 아니므로 방법 조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는 보일러 가동의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세대내부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스 조리기구등을 사용하실 계획인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아파트서비스 부문 (공통)

- 시아파트서비스(가전연동인터넷) 서비스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KT GiGA Genie 홈 IoT 서비스로 제공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무상 제공예정입니다.
- 시아파트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현재 예정된 서비스상품 제공시 KT 시스피커 이외의 타사 시스피커 사용시 이용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아파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입주시 별도의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하며, 무상제공기간 종료 시점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 됩니다.
- 시아파트서비스 내용은 주택 건립현장 여건 및 구조, 상품개선, 제공업체의 공급 가능여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아파트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세대 내 별도의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야 하며, IoT가전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네트워크(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회선 및 WiFi 환경은 입주자 부담)
- IoT연동 가전기기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연동 및 Home to Car 서비스는 KT연동이 가능한 모델에 한해 제공됩니다.
- TV 및 음악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테라스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일부 테라스에 표현된 목재 데크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출한 것으로 실 시공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테라스(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공품목 : 테라스, 옥외공간(4층 복층 외부 공간), 난간대

- 미제공품목 : 바닥 옥재스타일 데크, 어닝, 각종 놀이기구, 운동용품, 테라스 물품 등 각종 디스플레이 소품 등

- 최상층세대 다락은 바닥난방이 되지 않으며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테라스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발코니전면 일부 타일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로 설계된 공간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테라스로 설계된 공간은 외부 공용공간으로서, 발코니 공간에서 출입은 불가합니다.

- 테라스 및 P/B공간, 보일러실 등에 시공된 배관, 기타 수전이나 배관이 노출되는 경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테라스에는 우·오수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진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세대는 설치됨.) 테라스 외곽에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의 난간이 설치됩니다.

-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벽체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 간 경계벽, 난간대는 본 공사 시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설계상 발생하는 공용 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테라스하우스세대 중 테라스에 식재를 하려면 화분, 플랜트박스 등, 별도의 조경시설이 필요함. 화단의 식재는 입주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당사와 무관합니다.

- 1층, 2층의 배면에 위치한 방의 경우 건축물 후면부의 외벽이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와서 마감되므로 일반세대와 비교하여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는 시행 및 시공사가 준공 시에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건축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 후 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테라스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설계상 다른 세대 상부에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가설시설물(예시: 조경, 파고라, 놀이기구 등) 설치 시 하중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 시 전문가에 의한 설치/시공을 권장하며, 인접세대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당사는 무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델하우스 미건립 세대 마감재 관련

- 모든 주택형에 동일한 마감재 제품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시 고지되는 마감재 목록 및 견본주택의 시공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 천정(천정지), 바닥재(마루,갈레반이), 각종 조명, 우드시트, PL샤시, 신발장 붙박이 가구, 수전(청소용,세탁기용,손빨래용), 침실벽지

- 거실/주방: 거실 계단벽면, 거실 실크벽지, 거실 우물천청벽지, 바닥마감(다용도실, 보일러실), 붙박이가구(상부장/하부장/싱크대상판/벽면), 씽크수전, 월패드, 주방액정TV, 욕실폰, 네트워크스위치, 세대 서버폰,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쿡탑

- 욕실(각 층별 외욕실/내욕실 구분됨) : 천정판별, 벽체마감, 바닥마감, 젠다이, 수전, 위생도기(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건걸이, 휴지걸이

- ※ 주택형과 벽면, 바닥면 등의 면적에 따라 수량과 시공면적은 상이하며, 설계도면상 어울리는 형태로 시공됩니다.

- ※ 모든 주택형의 마루(거실/주방 등) 바닥재는 강마루와 폴리싱타일 중 무상선택 가능합니다.

- 146㎡ 및 173㎡형에 시공되는 거실 아트월 하부 중앙 흑색 대리석 마감재는 타 주택형에는 시공되지 않으며, 대리석 무늬 타일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146㎡형 상층부 침실1 여닫이 문은 비대칭형 큰 문으로 설치되며 타 주택형에는 해당자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 주방공간 및 아일랜드 조리대 크기에 따라 주방 상단 레인지후드의 모델명/색상/형태/크기 등이 상이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중문연계형 반닫침장, 복도 와인장 및 콤팩 냉장고는 146㎡ 및 173㎡형 주택에만 설치됩니다.

- 욕실내 타원형 욕조와 욕실내 난방코일은 124㎡형 및 146㎡, 173㎡형에만 시공되며, 타 주택형은 일반욕조가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건립형인 146㎡ 형의 알파룸에 선택형으로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타 주택형에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거실 주 조명은 견본주택 건립형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나, 각 주택형 거실 면적에 따라 다른 크기의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각 세대의 기본 제공 에어컨은 주택 및 각 실 면적에 따라 적합한 면적의 제품이 설치되나, 천정고가 높은 개방형 거실 공간을 냉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청구 진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이행여부)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는 KS F2292기준 1등급 이상 제품 사용(주거전용부분)
고효율 기자재	적용	•전동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실별 온도 조절장치	적용	•세대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수전류
태양광에너지	적용	•태양광설비는 신재생인증제품적용 - 계단실등 공용부 전기에 활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VAT포함)	비 고
건축감리	㈜동우이앤씨	307,285,000	
전기소방, 정보통신감리	㈜신덕엔지니어링	27,500,000	

분양보증

▣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 증 금 액(원)	보 증 기 간
01292019-101-0000100	일백팔십오억일천육백사십만원정 ₩18,516,4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임대차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임대차에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임대차 계약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률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도,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분양형태지신탁 관련 고지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스마일씨엔디가 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태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스마일씨앤디이며, 대영에코건설(주) 및 (주)태왕이앤씨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형태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주)하나자산신탁이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관련법에 따라 대영에코건설(주) 및 (주)태왕이앤씨가 처리한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스마일씨엔디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스마일씨엔디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주)하나자산신탁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의무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주)하나자산신탁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공동 시공사	공동 시공사	위탁사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영에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왕이앤씨	주식회사 스마일씨앤디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7길8, 3층(중방동)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66 (신천동)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55, 7층(신암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76011-0022133	170111-412495	170111-0640939
사업자 등록번호	214-86-34082	513-81-20914	504-81-89073	559-86-00729

▣ 분양홈페이지 : <http://chagalvillage.com/>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674 ▣ 연락처 : 053) 795-17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